
학회 임원 명단

제11대 임원진

고 문 : 정두용(前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경구(서울대학교 교수)
 강순원(한신대학교 교수) 한건수(강원대학교 교수)

회 장 : 박순용(연세대학교 교수)
부 회 장 : 이경한(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조대훈(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김덕여(칠성초등학교 교장) 김선미(중앙대학교 교수)
편집위원장: 김다원(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총무 이사 : 박환보(충남대학교 교수)
연구 이사 : 김종훈(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기획실장)
국제 이사 : 허신혜(한남대학교 교수)
대외협력 이사 : 김진희(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기획 이사 : 박형민(서강대학교 겸임교수)

이 사 : 김갑성(前 강원도교육청 교사) 김성원(연세대학교 교수)
 김희경(서경대학교 시간강사) 박지환(전북대학교 교수)
 서재복(전주대학교 교수) 유성상(서울대학교 교수)
 이지향(서울대학교 겸임교수) 이찬수(보훈교육원 원장)
 이춘희(서울 안천초등학교 교장) 임기식(예원초등학교 교사)
 정애경(서울국제고등학교 교사) 조우진(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본부장)
 조철기(경북대학교 교수) 한승미(연세대학교 교수)

감 사 : 서경전(안양 호성중학교 교사) 윤명자(前 서울시교육청 교사)

총무간사 : 배현지(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과정)
회계간사 : 이한결(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과정)
편집총무간사 : 김상혁(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편집회계간사 : 임미연(대전 동도초등학교 교사)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국제이해교육의 연구와 관련 활동을 통하여 국제이해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제이해교육의 근본이념을 실현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학회 회장의 사무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 사무소와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사 업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정기연차 및 수시 학술회의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3. 회원의 연구 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4. 국내외의 국제이해교육 및 인접 학술단체와의 제휴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며, 개인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뉜다.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 절차를 밟은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1. 각급 학교 및 이에 종사하는 교원(유치원, 초·중·고·대학교)
2. 국제이해교육 관련 연구 기관이나 행정 기관 및 이에 종사하고 있는 자(석·박사 과정 포함)
3. 국제교류기관 및 그 기관이나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자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구성원이 되며, 총회에서 의결권과 발언권
2. 본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본회의 운영 또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4. 본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배포 받을 수 있는 권리

② 준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한 정회원의 권리를 갖는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총회가 정하는 회비의 납부 의무

제8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 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2.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제 4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내외(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이사 20인 내외
4. 감사 2인
5. 고문

제11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고문은 전임회장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총회 선출직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 4.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5 장 총 회

- 제14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개최하며,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 1. 이사회와 의결이 있을 때
 -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산입하되, 그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8조 (총회의 회의록) ①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서는 의사의 경과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2인의 회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19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20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되, 늦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서와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4. 본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입회와 퇴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7. 본회 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8. 본회 사업과 관련된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22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이사회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 의 경과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장 및 상임 이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24조 (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국

제25조 (사무국 설치)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이사 중 회장이 임명한 총무이사가 이를 관장한다.

제26조 (사무국의 구성)

- ① 사무국에 필요한 간사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는 상임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국에 관한 제규정은 이사회에 정한다.

제 8 장 연구위원회

제27조(연구위원회의 구성)

- ① 연구위원장은 이사 중 회장이 임명하며, 학회의 학술대회와 연구 발표회를 주관한다.
- ② 연구위원의 구성은 위원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연구위원회에 관한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장 편집위원회

제28조(편집위원회의 구성)

- ①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지의 편집 출판을 담당한다.
-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결정한다.
- ③ 위원회에 관한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10 장 재정 및 회계

제29조 (수입금) 본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보조금 및 기부금
3. 기타 수입금

제30조 (회비의 책정) ① 회비의 회비는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의 연회비로 하며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1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회장의 임기를 기준으로 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 (사업계획과 예산) 회장은 본회의 연간사업계획과 예산을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결산) 회장은 매 회계 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장 보 칙

제32조 (정관개정) 본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33조 (시행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

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 당시의 본회의 정회원과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한 정회원 또는 임원으로 본다.
3. **(임원임기 예외규정)** 초대임원의 임기는 2002년 2월말까지로 한다.
4. **(1차개정)** 이 정관은 2017년 2월 26일부터 개정·시행한다.
5. **(2차개정)** 이 정관은 2019년 5월 1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국제이해교육연구』간행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국제이해교육연구(Journal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이하 학술지라 약함)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간행횟수 및 간행일)

학술지는 연 3회 발간되며 각 권 1호는 4월 30일, 2호는 8월 30일, 3호는 12월 31일에 발간한다.

제 3 조 (게재논문의 내용과 장르)

1. 논문의 내용

제출되는 논문은 국제이해교육 및 이에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며, 독창성을 갖는 미발표 논문이어야 한다.

2. 논문의 장르

논문의 장르에는 연구 논문과 현장 연구가 있다. 연구 논문은 심도있는 이론적 분석이 들어간 논문을 의미하고, 현장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국제이해교육 관련 내용을 실천한 사례의 결과물에 대한 글을 의미한다.

논문의 장르는 게재신청서에 명시되어야 하지만 만약 게재신청서에 표기된 장르와 제출된 논문의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허락을 얻어 원고의 장르를 수정

할 수 있다.

제 4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1.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2.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다양한 연구주제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제이해교육 및 유관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의 전문성과 능력을 입증 받은 중진 학자들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전공분야와 전국적인 분포도를 고려하여 선정·위촉 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편집위원회의 운영

-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3) 편집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5. 편집간사

편집과정을 보조하는 편집간사를 둔다.

제 5 조 (논문심사) 논문심사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본 위원회는『국제이해교육연구』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심사위원을 선임하여 논문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의 수는 논문 당 3인으로 한다.
3. 본 위원회는 본 학회지의 편집방침과 평가자의 심사 의견에 기초하여 투고된 논문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4. 본 위원회는 평가자의 심사 의견과 논문 제출자의 수정 결과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 6 조 (심사료 및 게재료)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료와 게재료는 별도로 정한다.

제 7 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기존의 <학회지 심사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200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 (1차개정) 이 규정은 2019년 9월 21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국제이해교육연구』연구윤리규정

제 1 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은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국제이해교육연구』(이하 학술지라 약함)에 기고하는 논문(연구 논문과 현장 연구)의 저자(이하 연구자 혹은 저자)가 준수해야 하는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연구윤리의 준수서약)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는 학술지의 원고 모집을 할 때 연구윤리규정을 공지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연구자의 연구윤리)

학술지에 기고하는 논문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지켜 작성되어야 한다.

1.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은 독창적인 연구내용을 담은 것으로,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한 사실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할 때에는 연구참여자(연구 대상)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 1)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거나, 연구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하는 연구 위조 및 왜곡 행위.

- 2)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적절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 3)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4. 학위 논문의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밝힌다.

제 4조 (연구 업적의 표기)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를 직접 행하거나 연구에 실질적인 공헌을 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의 공동저자로 참여해야 하며, 공동저자의 표기는 해당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도록 해야 한다.
3.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사람에게는 논문의 공동저자격을 부여하거나 혹은 적절한 방식의 감사의 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제 5 조 (연구윤리 심의와 의결)

1.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심의·의결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며, 그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2.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신고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내용에 대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위반내용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의결한다.
3.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된 회의는 편집위원 또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4.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6 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징계)

제 5 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편집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징계를 결정하며 징계 내용은 중복될 수 있다.

1. 해당 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취소한다.
2.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3. 한국학술연구재단에 연구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4. 해당 연구자에게 향후 5년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5. 편집위원회는 제5조에서 정한 심의와 의결 및 제6조의 조치와 징계 관련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심사 결과를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의 이사회에 보고한다. 보고서에는 심사의 위촉내용, 심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 행위,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절차, 심사 결정의 근거, 심사 대상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연구윤리 위반에 따른 징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

『국제이해교육연구』원고 제출 및 논문 심사 절차 안내

1. 원고 제출 안내

1. 『국제이해교육연구』에 발표하는 논문은 국제이해교육 및 이에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며, 독창성을 갖는 미발표 논문이어야 한다.
2. 투고신청서 및 원고 제출
투고를 희망하는 사람은 원고와 더불어 학회가 별도로 정한 양식의 투고 신청서와 정보수집동의·연구자윤리서약·저작권이양동의서를 작성하여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에 탑재·제출하여야 한다. 원고는 파일 형태로만 접수하며, 편집위원회는 접수여부를 이메일로 투고자에게 답신하여야 한다. 원고와 투고 신청서 및 동의서는 수시로 접수하나, 각 권 1호의 원고는 2월 28일, 2호의 원고는 6월 30일, 3호의 원고는 10월 30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3. 2인 이상 집필 논문의 제1저자를 구분, 공동저자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를 게재 신청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논문에는 제1저자, 제2저자의 순서대로 표기한다.
4. 초록 및 주제어
원고에는 한글초록과 영문초록 Abstract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각의 초록 말미에는 원고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주제어를 5개 내외로 표기하여야 한다.
5. 원고의 반환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6. 원고작성 지침

원고는 학회가 별도로 규정한 원고작성 지침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7. 원고의 분량

원고의 분량(본문, 각주, 도표, 참고문헌, 한글초록, 영문초록 포함)은 A4 용지 20쪽 내외로 한다. 원고의 분량이 이를 초과할 경우 해당 원고에 대한 부가 게재료를 부과한다.

8. 논문의 제출

논문은 한글 2002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홈페이지: <http://www.koseiu.or.kr>

E - mail: 국제이해교육학회 편집위원회: koseiu@naver.com

부칙(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9월 21일부터 개정 · 시행한다.

II. 논문심사 및 게재

1. 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본지에 게재할 논문은 학회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 3인 이상으로부터『국제이해교육연구』 게재논문심사표(별첨)의 기준에

따른 심사를 받고 이를 통과하여야 한다. 투고논문의 초심 판정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판정	점수	총점기준 판정결과
수정 없이 게재(A)	3	· 8~9점: 수정 없이 게재 · 5~7점: 부분 수정 후 게재 · 3~4점: 전면 수정 후 재심사 · 0~2점: 게재 불가
부분 수정 후 게재(B)	2	
전면 수정 후 재심(C)	1	
게재 불가(D)	0	

3. 편집위원회는 판정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1) “게재 불가”가 결정된 원고는 동일한 제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 2) “전면 수정 후 재심”이 결정된 원고는 해당 호에는 게재하지 않는다. 투고자가 새로이 논문게재신청서와 전면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면 다음 호 발간 시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3) “부분 수정 후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투고자의 수정과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서 게재하도록 한다.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수정된 논문과 수정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 및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존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4) “수정 없이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해당 호의 학술지에 수정 없이 게재한다.

<별 첨>

『국제이해교육연구』게재응모 논문 심사표(I)

논문제목	
------	--

◎ 아래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의 정도를 해당란에
○표 해주십시오.

심 사 기 준	우수함	보통임	미흡함
1. 주제의 적절성 (국제이해교육 분야와의 관련성)			
2. 연구주제의 독창성 및 명료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관련문헌과 자료 분석의 충실성			
5. 내용전개의 명확성 및 일관성			
6. 학문발전의 기여도			
7. 교육현장에 대한 적용가능성			
8. 논문 초록 및 주요어의 적절성			

◎ 판정은 아래의 4가지 중 하나에 ○표 하시고, 심사의견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부분 수정후 게재」또는「전면 수정 후 재심」일 경우에는 소정요구 사항을, 「게재 불가」일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에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종 합 평 가	수정 없이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전면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 심사의견(수정요구 사항 및 게재 불가 사유는 별지 사용):

『국제이해교육연구』게재응모 논문 심사표(II)

논문제목		
수정요구사항 또는 게재불가 사유 (심사위원 작성)	이 행 사 항(논문투고자 작성) ※ 논문 페이지 기입	

※ 심사의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의미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병기한다. 외국인의 인명은 원어 또는 한글로 쓴다.
4. 모든 원고에는 한글 <요약>과 영문 <abstract>가 첨부되어야 한다. 한글 <요약>은 800자 내외로 작성하고, 아래에 주제어를 5개 내외로 제시하여 논문 제목 다음 부분에 게재한다. 영문 <abstract>는 500단어 이내로 작성하고, 아래에 key words를 5개 내외로 제시하여 참고문헌 다음 부분에 게재한다. 단, 영문 원고의 경우도 해당 언어에 맞게 요약과 초록에서 각각 제시한다.
5. 영문 원고나 영문 <abstract>에서 필자의 영문이름은 성이 앞으로 가도록 한 다음 콤마를 찍고, 나머지 이름은 자신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적으면 된다.
(예) Hong, Kil Dong
Hong, Kildong
Hong, Kil-Dong
6. 논문은 교정이 완전히 끝나서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완전한 상태로 제출한다. 본 학회의 논문 편집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출판된 논문에서 발견되는 맞춤법, 띄어쓰기, 구두점 등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필자에게 있다.

7. 논문 편집기준

1) 편집 기준

- 1단편집
- 글자모양: 휴먼명조체
- 제목: 글자크기 16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
- 성명(소속기관): 글자크기 10포인트 (진하게, 오른쪽 정렬)
- 본문: 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200%, 들여쓰기 10
- 각주: 글자크기 9포인트, 줄간격 160%, 들여쓰기 9
- 도표: 표제목 10 포인트, 표내 글자크기 9, 줄간격 160%
- 참고문헌 : 글자크기 9포인트, 줄간격 180%

2) 본문의 체제별 편집기준

구분		위치	행간	글자크기, 글씨체
장	I, II, III	가운데 정렬	위로 두행 비움 아래로 한행 비움	13, 진하게, 휴먼명조
절	1.2.3.	들여쓰기 10	위로 한행 비움	10, 진하게, 휴먼명조
항	가.나.다.	들여쓰기 10	위로 한행 비움	10, 진하게, 휴먼고딕
목	1) 2) 3)	들여쓰기 20	위로 한행 비움	10, 진하게, 휴먼명조
	가) 나) 다)	들여쓰기 20	줄을 비우지 않음	10, 진하게, 휴먼 고딕
각주		들여쓰기 10	줄을 비우지 않음	9, 보통, 휴먼 명조

- 3) 제목과 소제목, 인용문은 앞뒤로 한 줄씩만 띄운다.
- 4) 논문 제목의 부제는 앞에 ‘:’을 달아 연결한다.
(예) 한국학교의 학교교육: 한성화교소학교를 중심으로
- 5) 문단을 바꿀 때 문단의 첫째 줄은 두 칸을 띄어 쓴다.
- 6) 단어와 단어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는 한 칸만 띄운다. 마침표 다음 두 칸을 띄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7) 복합명사나 복합동사는 가능하면 붙여 쓰도록 한다.
- 8) 한글 원고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병기한다. 외국인의 인명은 원어 또는 한글로 쓴다.
- 9) 주는 모두 각주를 사용한다.

8. 표 편집 기준

- 1)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표에는 < >, 그림에는 [] 과 같은 괄호를 사용하고, 표의 제목은 상단 중앙에, 그림의 제목은 하단 중앙에 제시한다.
표와 그림은 원본 그대로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한다.
(예) <표 1>, [그림 1]

9. 인용 표시

- 1) 본문 및 각주의 저술인용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자의 이름이 언급된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연도, 또는 발행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예) 이 문제에 관하여 홍길동(2001)은 …

홍길동(2001: 15)은 …

(2) 저자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연도, 해당 면을 표시한다. 저자명 다음에는 쉼표를 찍는다.

(예) …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홍길동, 2001: 18).

한 연구(홍길동, 2001)에 의하면 …

(3)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 한글,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의 순으로 저자를 나열하고, 같은 문자를 사용하는 저자들은 연도순으로 쌍반점(:)을 사용하여 저술을 구분한다. 인용의 순서는 한국 것은 저자명의 가나다 순, 중국과 일본의 것은 저자명 한자음의 가나다 순, 서양의 것은 알파벳 순으로 한다.

(예) … 옳다고 본다(이도령, 2001: 20-21, 2007: 18; 홍길동, 2005; Anderson, 1999: 35; MaMillan, 2001).

(4) 저자가 다수일 경우 3인까지는 모두 표시하되, 4인 이상은 첫 번째 저자만 나타낸다.

(예) … (홍길동, 이도령, 황진이, 1990: 34-36; 홍길동 외, 2003;

Hong, Park and Jang, 1968; Hong & Jang, 1985; Anderson et al., 2000).

10. 참고 문헌 작성 기준

1) 참고문헌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참고문헌은 본문이나 각주에 인용된 문헌만 표기한다.
- (2) 참고문헌의 순서는 한국, 중국, 일본, 서양의 순서로 하고, 논문과 저서의 구별 없이 한국 것은 저자명의 가나다 순, 중국과 일본의 것은 저자명 한자음의 가나다 순, 서양의 것은 알파벳 순으로 한다.
- (3) 같은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에는 연도순으로 나열한다. 같은 연도에 출판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에는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대로 출판연도에 영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하고 차례대로 나열한다. 같은 저자의 두 번째 문헌부터는 저자의 이름 부분에 이름 대신에 밑줄을 긋는다.
- (4) 단행본은 출판장소와 출판사를 명기해야 하며, 잡지나 학술지는 명기할 필요가 없다.
- (5) 저자가 2인 이상일 때에도 모든 저자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영문저자의 이름은 가능하면 full name으로 쓴다.
- (6) 논문은 학술지나 책 속의 쪽수를 표시하도록 한다.
- (7) 번역본은 번역본의 출판연도를 적고, 번역본의 서지사항 다 음에 가능하면 원어의 서지사항을 대괄호 [] 안에 적는다.
- (8) 한글로 된 책이나 논문집 이름(권, 호수 제외)은 진하게 하며, 서양어로 된 책이나 논문집 이름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 (9) 학위논문은 학위종류를 밝히고, 학위 수여대학을 다음에 적

는다.

(10) 자료는 저술이 끝난 다음에 한 줄을 띄우고, <자료>라고 표시한 뒤 적는다.

(예)

김길동(2001). **창의력**. 서울: 공공출판사.

_____(2006). 열린교육 평가를 위한 연구. **교육학연구** 44(2). 한국교육학회. 143-166.

나가이, 미유키(2004). 화교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대학교.

마커스, 조지, 마이클 피셔(2005). **인류학과 문화비평**. 홍길동(옮김). 서울: 아카넷. [Marcus, George E. & Michael M. J. Fischer(1986). *Anthropology as Cultural Critiqu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박첨지(2005). 국제이해교육의 창의력 평가. **창의력 평가**. 홍길동(편). 서울: 공공출판사. 233-256.

이도령(1999). 영국의 융합교육. **융합교육과 국제이해교육**. 홍길동, 박첨지, 이도령, 김길동(편). 서울: 공공출판사. 345-376.

홍길동(1990a). 다문화사회에서의 국제이해교육. **제7차 국제이해교육 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3-9.

_____(1990b). 다문화사회와 국제이해교육. **한국대학교 다문화사회연구소 세미나 발표논문**.

홍길동 편(2006).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이해교육**. 서울: 공공출판사.

홍길동, 김길동, 박첨지(2008).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 **국제이해**

교육연구 3(1).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5-26.

Foucault, Michael(1986). Nietzsche, Genealogy, History. *The Foucault Reader*.

Paul Rabinow (ed.). New York: Pantheon. 76-100.

Hong, Kildong(2004).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al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5. 177-197.

Lauder, Hugh, Phillip Brown, Jo-Anne Dillabough and A. H. Halsey, eds.(2006). *Education, Globalization and Social Chan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McMillan, James H.(2006). *Classroom Assess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Effective Standards-Based Instruction* (4th ed.). Boston: Allyn and Bacon.

<자료>

대한신문. 2005. 3. 15일자.

시사저널. 한국의 다문화가정 실태(홍길동). 2000. 6. 15일자. 23-24.

New York Times. 2004. 7. 18일자.

편집위원장 김다원(광주교육대학교 교수)

편집위원 강영민(중국 베이징사범대학 교수)

강운선(대구대학교 교수)

고길희(일본 야마가타대학 교수)

권상철(제주대학교 교수)

김이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영훈(강원대학교 교수)

이경한(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이선경(청주교육대학교 교수)

편집총무간사 김상혁(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편집회계간사 임미연(대전 동도초등학교 교사)

국제이해교육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일 2020년 8월 31일

발행처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http://www.koseiu.or.kr>

koseiu@naver.com

제작처 책과공간(02-725-9371)

ISSN 2005-3665(Print)

ISSN 2671-5538(Online)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2020

비매품